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수재가노인복지센터

제1조 계약목적

분당수재가노인복지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 호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함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센터와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되,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등급의 변동, 년도전환으로 인한 급여수가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관한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에 따라 15%~0%의 이용료를 부담한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한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의료수급자						9%,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8,99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80,230		목욕차량 미이용(60분이상) (가정내 목욕제공)		50,100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방문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 내용 준수
-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⑥ 급여 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⑦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 ⑤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5. 고의적으로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 7.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상-